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문

의안 번호	917
----------	-----

발의연월일 : 2012. 7. .
발의자 : 정현희 의원 외 8명

1. 주 문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구청장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중구 상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함

2. 제안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도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대형마트 등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면서 논란과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일소하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빨리 지정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하여 본 회기에 관련조례 개정을 의결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은 하루속히 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

3. 결의문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촉구 결의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코자 지난 5개월 동안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위법령 미개정 및 행정소송·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조례개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범위와 의무휴업일이 하루빨리 지정되어 유통산업발전법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본 회기 중 조례개정을 의결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장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고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중구 상인들의 요구 및 전국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하루속히 우리 구에서도 대형마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2. 7. 27.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일동